

담당	책임자

# 특정금전신탁 계약서

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.

- ※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.
- ※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(고객)와 수탁자(은행)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

신탁계약일	계약명	계좌번호		
구 분		내 용		
제2조	신탁금액			
제3조	신탁기간	(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: )		
제4조	신탁원본의 수익자	주소 :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성명 :	인(서명)	
	신탁이익의 수익자	주소 :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성명 :	인(서명)	
제7조	운용내역 통보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우편,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우편,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(E-mail), <input type="checkbox"/> 통보생략(불원)		
제13조	신탁기본보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선취기본보수 = 신탁금액 x ( ) % <input type="checkbox"/> 후취기본보수 = 신탁원본평균잔액 x ( ) % x 신탁기간(일수) ÷ 365		
제17조	중도해지	1. 구간별 징구 신탁계약일로부터 ( )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 신탁계약일로부터 ( )이상 ( )미만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 신탁계약일로부터 ( )이상 경과시 : 해지 신탁금액의 ( )% 2. 경과기간별 징구 해지 신탁금액의 ( )%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÷ 신탁기간 총일수		
제18조	신탁계약의 종료사유			
제24조	특약			
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신탁자금 운용방법 (별표1) (운용대상의 종류)	세부내용		
		운용대상		
		위험도		
		운용비중		
		운용대상		
		위험도		
		운용비중		
		운용대상		
		위험도		
		운용비중		
		운용대상		
		위험도		
위탁자	주소 :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성명 :	인(서명)		
대리인	주소 :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성명 :	인(서명)		
수탁자	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같습니다.			

■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(문자통보안내) 신청

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	<input type="checkbox"/>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.	고객명 :	인(서명)
	<input type="checkbox"/>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거절합니다. - 신탁만기도래, 운용자산 만기도래, 추가입금액,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	대리인 :	인(서명)





# 특정금전신탁 계약서

-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"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"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,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. 다만,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, 관리 및 주심을 한다.
- ⑧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

### 제19조 (양도 및 담보제공)

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20조 (일부해지)

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 이 경우, 수탁자는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.

### 제21조 (신탁계약의 변경 등)

-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이하 "계약서"라 함)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22조 (사고신고 등)

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중서, 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
2. 위탁자,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·상호·주소·전화번호 등의 변경,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

### 제23조 (인감신고)

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 제24조 (특약)

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# 제25조 (준용)

이 신탁계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.

### 제26조 (관할법원)

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.

### 제27조 (신탁계약서 작성)

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,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 중서를 교부한다.

년 월 일

위탁자 주 소 : \_\_\_\_\_  
 생년월일 / 사업자번호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(법정)대리인 주 소 : \_\_\_\_\_  
 생년월일 / 사업자번호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원본수익자 주 소 : \_\_\_\_\_  
 생년월일 / 사업자번호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(법정)대리인 주 소 : \_\_\_\_\_  
 생년월일 / 사업자번호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이의수익자 주 소 : \_\_\_\_\_  
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(법정)대리인 주 소 : \_\_\_\_\_  
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\_\_\_\_\_  
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수탁자 주 소 : \_\_\_\_\_  
 성 명 : (주)하나은행 \_\_\_\_\_ 지점  
 부(점)장 : \_\_\_\_\_ (인/서명)

### [별표1]

#### 신탁자금 운용방법

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(내지 25.에서 정한 방법)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[별표2]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출금	10. 외화증권	19. 공사채형수익증권
2. 콜론	11. 보증어음	20. 주식형 수익증권
3. 환매조건부채권	12. 자유금리기여어음*	21. 기타의 유가증권
4. 국채	13. 표지어음	22.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
5. 통화안정증권	14. 중개어음	23. 증권지수의 선물거래
6. 기타 금융채	15. 발행어음	24. 권권의 옵션
7. 지방채	16. 양도성예금증서	25. 기타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
8. 사채	17. 신용카드채권	
9. 주식	18. 개발신탁수익증권	

\*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,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,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\*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.

### [별표2]

####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\_\_\_\_\_ 지점 앞

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.

- 신탁 계약일 : \_\_\_\_\_
- 계좌 번호 : \_\_\_\_\_
- 운용지시 내용 : 신탁자금 운용방법[별표1]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「세부내용」란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탁자금 운용방법 (별표1) (운용대상의 종류)	세부내용	
	운용대상	
위험도		
운용비중		
운용대상		
위험도		
운용비중		
운용대상		
위험도		
운용비중		

년 월 일

위탁자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  
 주 소 : \_\_\_\_\_

(법정)대리인 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  
 주 소 : \_\_\_\_\_

